

사업 개요

사업목적



▶ 대덕특구 내에서 생산된 기술의 대규모 실증 지원을 통해 新기술 기획 창업 및 대전지역 기업으로 사업화 촉진

사업기간



▶ 2022. 3. ~ 2023. 9. (총 19개월)

- 총 사업기간은 1차 사전기획과제와 2차 실증사업을 포함한 기간임
 - * 1차 사전기획과제 (2022. 5월 ~ 7월 (3개월))
 - * 2차 실증사업 (2022. 10월 ~ 2023. 9월 (12개월))

지원대상



▶ 대전지역 기업 또는 대덕특구 소재 출연(연), 대학

- * 주관기관은 대전지역 소재 출연(연)(대전지역 소재 분원도 가능), 대학교·기업 모두 가능하며, 기업의 경우 본사 또는 지사, 연구소가 대전지역이면 지원 가능

지원규모



▶ 사전기획과제: 20백만원/과제당, 12개 과제

▶ 실증사업: 1,000백만원 내외/과제당, 4개 과제

* 실증사업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평가 및 검토한 후 지원 사업비와 과제 수를 조정할 수 있음

수행주체



▶ (재)대전과학산업진흥원



- ▶ 주소: (34115)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99, 2층(신성동)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사업기획단
- ▶ 문의전화: 042-865-0555 (김성조 선임연구원)

접수 및 문의처



www.distep.re.kr

2022년 대전형 융합신산업 창출 특구기술
실증 선도사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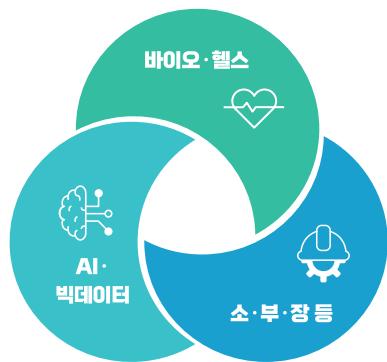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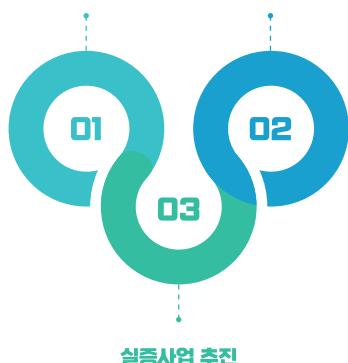
지원 내용 및 지원 조건

지원내용

1

▶ 대덕특구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및 창업을 위한 실증 비용 지원

대덕특구 내 출연(연), 사업화 및 창업 가능 대학교 보유기술 기술발굴



대덕특구 내 출연(연), 대학교가 보유한 기술 중
사업화 및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
발굴하여 실증사업 추진

3대 특화분야(바이오·헬스, AI·빅데이터,
소·부·장 등) 중심으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
신사업 분야를 발굴

지원조건

2

▶ 대전지역 기업 또는 대덕특구 소재 출연(연), 대학이 실증사업을 위해 컨소시엄(주관기관 포함 2개 기관 이상 참여 필수)을 구성하여 사업 참여

- 주관기관은 대전지역 소재 출연(연)(대전지역 소재 분원도 가능), 대학교,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기업의 경우 본사 또는 지사, 연구소가 대전지역이면 지원 가능
 - * 실증사업의 경우, 컨소시엄은 지원받는 시비의 최소 20%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(민간부담금 중 최소 50% 이상 현금 매칭 필수)
-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인정하며 사업 종료 후 성과 활용 비용은 소급 편성 불가
- 사업비 편성시 실증사업 비용 외 필수 수수료(이행보증보험, 위탁회계정산비용, 보험비용)는 편성 가능

▶ 사전기획과제 및 실증사업을 위한 기술의 성숙도는 TRL 6단계 이상인 기술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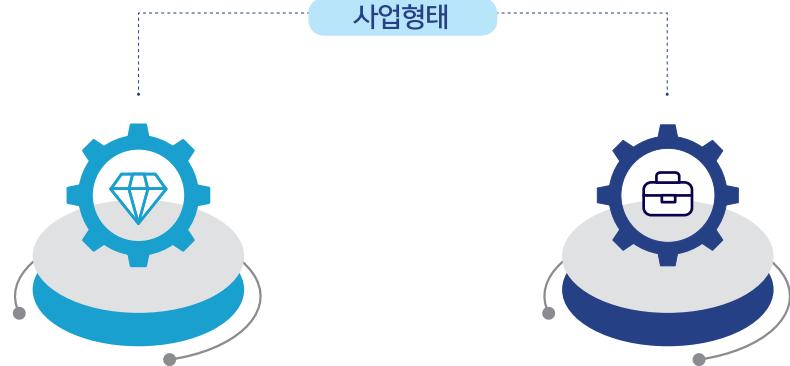
* 대덕특구 내 출연(연)과 대학교가 보유한 기술 대상임

사업 유형 및 신청 자격

사업유형

3

사업형태



기술이전사업화형

대전지역 기업이 대덕특구 내 출연(연),
대학교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 수행

기술출자사업화형

대덕특구 내 출연(연), 대학교가 보유한
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수행

▶ 지원예산

- 사전기획과제 과제당 20백만원
- 실증사업 과제당 1,000백만원 내외

▶ 지원기간

- 사전기획과제 3개월
- 실증사업 12개월

- 기술이전사업화형: 대전지역의 기업 또는 출연(연), 대학교가 실증사업을 주관하며 사업화 수행
- 기술출자사업화형: 대덕특구 내 출연(연), 대학교가 실증사업을 주관하고, 해당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기술창업 수행

* 주관기관은 사전기획과제와 실증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참여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권장

신청자격

4

- 사전기획과제 또는 실증사업은 사업 추진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
- 실증사업은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하여야 하며,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과업 수행 완료가 가능한 컨소시엄

선정 절차 및 협약 체결

선정절차

5

▶ 1차 사전기획과제



▶ 2차 실증사업



협약체결 및

사업비 지급

6

▶ 사전기획과제

- 협약 체결: 최종확정 후 진흥원과 주관기관 간 협약 체결
- 사업비 지급: 사업비(시비)는 협약 후 2주 이내로 전액 지급
- * 사전기획과제는 3책 5공 적용 예외 과제임

▶ 실증사업

- 협약 체결: 최종확정 후 진흥원과 컨소시엄(주관, 참여기관) 간 다자협약 체결
- 사업비 지급: 사업비(시비)는 협약 후, 주관/참여기관에게 분할하여 지급(3책 5공 적용 과제)
 - * 사업비(시비)는 협약 후 2주 이내로 전체 금액의 70%(착수금)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 조치 후 2주 이내 30%(잔금) 지급